# 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병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94

발의연월일: 2024. 6. 14.

발 의 자:이병진・이재관・이연희

송옥주 • 박주민 • 임호선

주철현 • 복기왕 • 유후덕

이원택 • 권칠승 • 강유정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참여자가 조난사고에 대한 예방·대응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고, 구조업무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·사망한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구조업무에 사용한 장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등 물질적 손실 발생에 대한 보상 근거가 미비하여, 민간에 의한 적극적인 구조활동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5조에서는 재난의 응급대책·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이에 구조업무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어민 등의 장비가 해 상구조 업무, 교육·훈련 등 조난사고 예방·대응 활동 등과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수리비용과 어민이 입게 되는 조업손실 등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난사고 시 구조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30조제8항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 수상에서의 수색・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구조업무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어민 등의 장비가 해상 구조 업무와 교육·훈련 등 조난사고 예방·대응 활동 등과 관련하 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수리비용과 어민이 입게 되는 조업손실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어민 등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(민간해양구조대원등의 처	제30조(민간해양구조대원등의 처
우) ① ~ ⑦ (생 략)	우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⑧ 구조업무에 참여한 민간해
	양구조대원과 어민 등의 장비
	<u>가 해상구조 업무와 교육·훈</u>
	런 등 조난사고 예방・대응 활
	동 등과 관련하여 고장나거나
	파손된 경우 수리비용과 어민
	이 입게 되는 조업손실 등을
	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
	따라 그 민간해양구조대원과
	어민 등에게 수리비용을 보상
	<u>할 수 있다.</u>